#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9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이해민·민병덕·김준형

김재원・김 현・서왕진

김선민 • 이정헌 • 차규근

백선희 • 신장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13조제2항).
-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 다.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라. 이사회는 사장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부사장의 임명동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함(안 제1

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 임명한다"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하는 경우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을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9명으로 구성한다"를 "13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궐이사의 경우 전임자를 추천한 주체가 추천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장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6의2.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후보 자 1명을 선정해 임명제청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⑦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를 "감사 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사 및 감사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호 중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u>방송통신위원회 위</u>	②제13조에 따른 이사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를 받아 임명한다.	<u>한다</u> .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③ <u>제13</u> 조에 따른 이		
임명한다.	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		
	회에서 임면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u>임명한다</u> .	④임명하되,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③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		
	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ol> <li>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li> </ol>		
	<u>해당하는 경우</u>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		
	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사장을 포함한------13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 <u>한 전문성, 지역성</u>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 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 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 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

④·⑤ (생 략)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 신설>

⑦ ~ ⑨ (생 략)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 12. (생 략)

② (생략) <u><신 설></u>

다. 다만, 보궐이사의 경우 전 임자를 주천한 주체가 주천한 다.

④·⑤ (현행과 같음)

----..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장 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 사의 해임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6의2.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 영

7.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 2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제청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가 정한다.